

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

(정진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1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1명)
찬 성 자 : 봉양순, 신정호, 임만균, 김경우,
이정인, 권영희, 문장길, 채유미,
이광호, 문병훈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
시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
서울특별시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
제1조)
- 나. 전직·현직 시장의 경우 시에 대한 공헌도,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
하여 장례를 시청장으로 할 수 있게 함(안 제3조)
- 다.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4조)
- 라.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장법」, 「국가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(葬)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서울특별시청장(葬)”(이하 “시청장”이라 한다)이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주관하여 장례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공무원등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, 「청원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시 소속 청원경찰(공공안전관)을 말한다.
3. “가족장”이란 사망자가 제3조에 따른 시청장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시청장을 원하지 않아 시청장 이외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청장의 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대한 공헌도,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장례를 시청장으로 할 수 있다.

1. 전직·현직 시장
2.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등
3.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등

제4조(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서울특별시청장 장례위원회(이하 “장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을 두는 경우 행정1부시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된다. 다만, 현직 시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을 두는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시청장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 또는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.

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청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장례위원회의 관장 사항)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.

1. 장례식의 일·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
2. 장례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

제6조(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집행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, 집행위원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에 따른 행정지원, 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.

제7조(장례의 집행) ①시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(殯所)를 설치·운영하며 운구(運柩)와 영결식(永訣式) 및 안장식(安葬式)을 주관한다.

-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향소(焚香所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장례비용) 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되,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.

- 1. 조문객(弔問客)의 식사 비용
- 2. 노제(路祭) 비용
- 3. 삼우제(三虞祭) 비용
- 4. 사십구일제(四十九日齋) 비용
- 5.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- 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(自然葬)을 위한 비용
- 7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봉안시설(奉安施設)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

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③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제9조(그 밖의 사항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상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취임 또는 당선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② 제3조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등에게도 적용한다.

③ 제3조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공무원등에게도 적용한다.

제3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울시장”을 각각 “서울특별시청장”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청장

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제4조(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, 제6조(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, 제7조(장례의 집행), 제8조(장례비용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 - 제4조(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, 제6조(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시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운영되어야 하므로 시청장의 대상(제3조)을 예견할 수 없어 연간 위원회 개최 횟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제7조(장례의 집행), 제8조(장례비용)에 따라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시청장의 대상(제3조)을 예견할 수 없으며, 또한 시청장 지원 대상자의 서울시 사회 공헌도 및 가족장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장례 집행 및 비용의 규모 등이 유동적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